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93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엄셋별 의원

고성미 의원

## 1. 제안이유

금천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의 책임성과 독립성 확보 및 금천구청과의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하고 구청장이 금천문화재단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 예산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점검 및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사용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정비

(안 제14조제2항)

나. 구청장의 금천문화재단 결산서 의회 제출 신설(안 제17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1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8. 23. ~ 2023. 8. 30.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사업의 대행)”을“(사업의 대행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구 결산서 제출 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업의 대행)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4조(사업의 대행 및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17조(결산서의 제출)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7조(결산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구 결산서 제출 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71호, 2022. 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개발
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
3. 금나래아트홀(갤러리를 포함한다) 운영 및 관리
4.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22.10.15.>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10.15.>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 중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10.15.>

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10.15.>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2.10.15.>

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10.1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1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22.10.15.>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95호, 2017.0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71호, 2022.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임이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